

# 改正 意匠法의 主要內容



金 重 孝

〈特許廳 書記官 대우〉

## I. 法改正의 背景 및 方向

舊意匠法은 日本의 意匠法을 根幹으로 하여 1961年에 制定된 以來 6次에 걸쳐서 改正되었으나, 改正內容을 보면 그때그때 改正當時의 必要한 事項에 대하여 斷片的인 改正에 그쳤기 때문에 現代法令으로서는 不合理하거나 未備한 問題點을 많이 안고 있었다. 더우기 國際的으로는 產業技術의 發展과 經濟交流의 擴大로 美國을 비롯한 先進諸國에서는 知的財產權의 保護制度를 強化하는 한편 產業財產權 關聯法律의 國際的 統一化(Harmonization) 作業이

積極的으로 推進되고 있으며, 國內的으로는 產業分野別 技術開發의 促進과 貿易規模의 擴大로 內外國人의 產業財產權 保護強化가 要求되고 있기 때문에 產業財產權制度의 國際的 統一化 趨勢에 副應할 수 있는 制度改革의 必要性이 增大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部分改正으로 因한 條文 配列上의 問題點等에 대한 全般的인 體制整備를 하기 위하여 全文改正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特許法中 86個條文을 意匠法에서 準用하였으나 이들 準用規定中 意匠權의 權利內容에 直接的이고도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23個 條文을 改正意匠法에 明示하여 効率的으로 意匠法을 適用할 수 있도록 改正하였다.

## II. 主要 改正內容

### 1. 國際公知主義採擇(第5條 第1項 第1號)

舊法下에서는 出願前에 이미 外國에서 公知公用된 意匠을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理由만으로 意匠權設定을 認定하였다. 그러나 世界가 하나의 市場圈으로 变모하는 現實과 意匠의 國際的 流行性을 考慮할 때 適切한 規定이라 할 수 없으므로 意匠制度의 先進化를 為하여 國際公知主義를 採擇하여 國內外를 不問하고 意匠登録出願前에 이미 알려진 意匠은 登錄받을 수 없도록 改正하여 他人의 意匠을 模倣한 不實한 意匠이 存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外國에서 刊行物에 記載되지 아니하고 單純히 實物로만 알려진 意匠의 경우에는 그 立證이 어려울 것이므로 同制度가 運用過程에서 實効性이 적은 規定이 될 憂慮가 있는 것은 事實이다.

### 2. 容易創作에 의한 不登録要件의 改善(第5條 第2項)

舊法下에서는 出願意匠의 實際調查에서 出願意匠과 同種物品間에 있어서는 容易하게 創作할 수 있다는 理由로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는 出願意匠과 同種物品間에는 意匠法 第5條 第1項에 依하여 兩意匠間의 類似與否를 判斷하여 決定함이 正當하고, 同條 第

2項에 依해서는 出願意匠과 異種物品間에 있어서 周知된 意匠에 限定하여 容易創作與否를 判斷하여야 하는 立法趣旨에相反되는 것으로써 意匠의 類似判斷과 容易創作 判斷이 混同運用되는 일이 없도록改善하기 為하여 改正하였다.

### 3. 審查官의 職權拒絕 制度改善(特許法 改正內容準用)

지금까지는 登錄查定한 出願意匠에 대하여 同意匠이 登錄設定되기 前에 새로운 拒絕理由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審查官이 職權으로 拒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번 登錄查定된 處分을 颠覆하는 것은 行政處分의 安定性과 信賴性을 크게 害치는 것이기 때문에 審查官의 職權拒絕은 出願意匠에 대한 登錄查定通知書의 發送前까지만 할 수 있도록改善하였다.

### 4. 國際出願에 관련된 出願의 出願變更特例規定新設(第22條)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出願되는 國際出願은 同條約의 規定에 따라 所定의 手數料를 납부하고 韓譯文을 提出하는 등의 國內出願節次를 밟은 後에 限하여 出願變更를 認定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舊法下에서는 出願變更時期에 대한 特例規定이 없었기 때문에 特許協力條約의 規定에 一致하도록 運用하고 있는 特許法 實用新案法과相反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為하여 國際出願의 變更時期에 關한 特例規定을 新設하였다.

### 5. 捷正却下制度 및 捷正却下不服 抗告 審判制度新設(特許法新設內容 準用)

舊法下에서는 出願人이 當初 提出한 出願書의 意匠考案의 內容을 訂正하거나 補完하기 위하여 補正書를 提出한 경기에 그 補正內容이 當初 出願意匠의 圖面이나 考案의 要旨에 記載한 內容을 擴大하거나 變更하여 當初出願의 要旨를 變更하는 것이라고, 審查官으로부터 通知를 받은 경우에는 그 要旨變更 判斷의 適否에 대하여 出願人이 不服을 다를 수 있는 法的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審查官의 判斷錯誤로 出願人에게 不測의 損害를 줄 우려가 있었으나, 新法은 이를 是正하여 出願人の 補正이 審查官에 의하여 要旨變更으로 判斷된 경우에는 審查

官은 同補正書를 却下處分하고 이때 出願人이 同却下處分에 대하여不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도록 特別한 節次를 새로이 認定함으로써 要旨變更判斷에 대한 適否를 上級審에서 다시 決定하게 하였다. 이는 審查官이 錯誤로 因하여 誤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出願人에게 最大的 權益이 保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新設된 制度이다.

## III. 맷는 말

意匠法은 特許法을 根幹으로 하여 制定되고 運用되기 때문에 特許法의 改正內容에 따라 改正하거나 準用하여야 한다. 따라서 改正主要內容以外에도 改正特許法에서 改善되는 節次 및 新設되는 制度는 물론 產業財產權制度의 國際化에 必要한 各種特例를 整備補完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改正된 意匠法은 特許法과 같이 節次는 改正形式으로 이루어졌으나 事實上 新法의 制定과 같이 法體制의 一大整備라고 보아야 한다. 舊法은 法體制構成이 不規則的으로 配列되어 있어 一般國民이 利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불편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總則, 意匠登録要件 및 意匠登録出願, 審查, 登錄料 및 意匠登錄, 意匠權, 意匠權者의 保護, 審判 및 抗告審判, 再審 및 訴訟 等의 順으로 構成하여 意匠登録을 하기 위한 出願에서 登錄은 물론 意匠權의 權利行使 및 審判等의 紛爭에 이르기까지 順次의으로 配列하고 現實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不適合한 用語를 代替하여 舊法의 7章 66條 體制를 改正法은 10章 89條 및 附則 7條 體制로 擴大構成하여 專門家가 아닌 一般國民들이 쉽게 理解할 수 있는 法이 될 수 있도록 努力하였다.

뿐만 아니라 考案者와 出願人の 權益이 크게 伸張되도록 改正하고 現代化된 法令體制를 갖추게 되었다는 點에서 先進意匠制度로서 面貌로 一新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完全無缺한 法令의 改正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改正法이 運營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問題點은 계속하여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